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0 - 116
----------	------------

제출일자 : 2020.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 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위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1,500.44㎡		지상2층 / 774.38㎡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4동 / 282.74㎡
근무인원	9명		4명		1명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3층	지도자숙소(5실)	옥상	천체관측관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일까지(3년간)**

다. 위탁사무 및 조건

○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3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연11,00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공개모집 시 지원단체 없으면 위원회 심의 후 현 수탁기관 재연장

3. 향후계획

- 2020. 11월 : 공개모집 공고
- 2020. 12월 : 제253회 정례회 의안 상정
- 2020. 12월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교사,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9명 등)
- 2020. 12월 : 수탁자 선정 발표
-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